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04 _ 2011년 12월



장애인의 '전용' 식탁?

중부내륙고속도로(하행) 선산휴게소에는 희한한 식탁이 있습니다.
 이름 하여 장애인 '전용' 식탁! 똑같은 식탁에 하얀 식탁보를 깔고, 곳곳에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하려는 주인의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런 식탁을 반길까요?
 요란한 표지판에 둘러싸여 밥 먹는 기분은 어떨까요? 장애인도 밥을 먹을 때도 분리되어야 하나요?
 선의는 고맙지만, 지나친 친절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습니다.

CONTENTS

| | | |
|----|--------------|---------------------|
| 02 | 장애와 이미지 | 장애인 '전용' 식탁? |
| 04 | 편집자 편지 | 한 해를 마무리하며 |
| 05 | 이 사람의 향기 |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
| 09 | 포커스 I - 의정 | 16개 광역 의정 활동의 변화 |
| 16 | 포커스 II - 조례 | 장애인 관련 우수 조례 BEST 7 |
| 33 | 포커스 III - 예산 | 장애인과 주민참여예산제도 |
| 39 | 포커스 IV - 접근성 | 모범음식점의 장애인 접근성 |
| 48 | 서평 |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 |
| 50 | Cinema | 블라인드 |
| 52 | 장애 이슈 | 장애계 소식 |
| 55 | 홍보 - 웹와치 | |

한 해를 마무리하며

네 번째 <모니터링 리포트>를 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당초 계획은 올해 다섯 번 발간하는 것이었는데, 중간에 한 번 쉬었습니다. 처음 두 번은 1,700부를 발간해서 장애인 단체를 비롯하여 일부 지방의원과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입소문이 나고 여기저기서 구독을 원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행 부수를 3,000부 이상으로 늘리는 대신 횟수를 한 번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반영하여 더 많은 독자들을 더 자주 만나 뵙겠습니다.

이 소식지를 처음 내던 지난 3월, 장애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좋은 정책을 개발하려는 지방 공무원과 의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모니터링센터 활동가들이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정확한 평가는 독자들의 몫이겠습니다만, 이런저런 지방 행사에서 만난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잘 읽었다”, “의정 활동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다”, “더 많은 자료를 보내 달라” 같은 말을 했을 때, 또 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모니터링 리포트>가 지역 사업 및 활동에 특별한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힘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지면을 통해 독자들을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사회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애 정책 수요가 더욱 많아 질 것이기에,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모니터링 리포트>가 더욱 알찬 정보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크고 작은 소망들을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25일 소장 윤 삼 호

서로를 배려하는 디자인,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대전광역시청 공공디자인 담당 **임병희** 사무관(오른쪽), **최승철** 주무관(왼쪽)

인터뷰, 정리. 김익수 / 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지난 금요일(12월 23일)에 대전광역시청에서 공공디자인을 담당하는 임병희 사무관과 최승철 주무관을 만나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이하 UD라 함) 도시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이를 통해 대전광역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UD정책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 편집자 주

2008년부터 대전광역시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UD는 건축이나 제품디자인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장애인, 노인 등을 배려한 누구나 사용하기 편한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UD의 정신을 도시에 적용시키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UD에 관심을 갖고 정책의 지향점으로 삼았는지 그 배경을 알고 싶네요.

대전광역시는 2008년 7월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해 경관조례 제정과 경관위원회 및 디자인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및 매뉴얼 보급 등 UD정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으로 알려진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 노약자는 물론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도록 제품이나 생활환경을 만드는 개념입니다. 도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노약자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인간중심적이고 기능적인 도시 조성이 가능하기에 UD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시청사가 2010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제의 제 1호 인증기관(1등급)으로 선정되었고, 뉴스를 보면 그전 6개월간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청사를 정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 수 있는지요?

우리는 2007년 하반기부터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2008년 4월에 확정하고 실천수단으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제도개선, 시범사업, 세미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2008년 시범사업은 대전시청사에 BF인증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시청사를 정비하여 전국최초로 BF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모범을 보이고 5개 자치구로 BF인증제도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시청사 정비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한국장애인개발원과의 수차례 회의와 현장방문 그리고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청사는 준공한지 9년 이상 지났고 공간 또한 넓어 사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성 확



▲ 시청사 내부의 계단 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모습



▲ 설치가 완료된 점자블록

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정비사항 또한 만만치 않았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현장방문과 지속적인 조언을 통해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비는 주로 장애인전용화장실, 안내사인, 장애인전용주차장, 접근로 등에 대해 시행되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1등급)으로 인증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인증 받은 후 많은 분들의 격려와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타 지자체에서 BF 인증 관련 벤치마킹을 위해 많이 방문하셨고 자료요청과 문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장애인 분들은 시청사를 직접 방문하고 사용해 보신 후 문제점을 지적하시기도 했으며,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장애인정책과 관련하여 도시 환경 개선도 시급합니다만, 동시에 발생 가능한 장애를 예측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조치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업 추진 시 기존 법률(가령,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준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행정일선에서 겪는 실무적 고충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시에서는 매년 유니버설정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비의 50%를 자치구에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가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 공공건축물을 정비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재정형편상 50%의 사업비 확보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F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인센티브로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전광역시의 UD사업에서 장애관련 주요 사업은 무엇입니까? 또 그 사업이 장애관련 주요사업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시 도시디자인과는 공공건축물을 정비하고 BF 인증을 획득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정비사업, 각 구청별 1개소씩 거리를 정비하는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F 인증 지침을 기준으로 공공건축물과 거리를 정비하고 있는데 장애인, 노약자는 물론 모든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배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들이 대전광역시의 UD사업에 관심을 갖고 한편으로는 관련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훌륭한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홍보를 통해 이용대상자의 열의와 관심을 모아야 할 텐데요, 대전광역시 UD정책의 홍보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6차례의 세미나(국제세미나 1회)를 개최해오는 등 교육 및 소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를 통한 관련 정보 제공과 사업 추진 시, 보도 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UD 협의회가 결성된 것으로 압니다. UD 협의회는 지자체 UD 정책에 어떤 영향과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UD협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대전유니버설디자인협의회는 금년 9월에 발족하였고, 11월 7일(2011년)에 개최한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협의회의 발족은 지금까지 관주도형으로 추진되어온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민관 협력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회는 다양한 이용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요구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의 추진 시 소통창구의 역할 및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UD사업이 궁극적으로 도시구조 환경 전반의 재구성이라고 할 때 현재 대전광역시 도시 환경 개선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시는 그동안 기존 건축물에 대한 UD 정비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2년부터는 시 산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도 설계단계부터 UD개념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설계부터 적용해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도시는 이미 그 형태를 갖추고 있어 단기간에 모든 걸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하고 또한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간다면 도시환경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의 장애인주차장. UD정책의 일환으로 정비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16개 광역 의정 활동의 변화

(민선5기 1차년도 : 2010. 07 ~ 2011. 06)

글. 강인영 / 모니터링센터 연구원

2010년 7월, 민선5기 지방의회의 막이 올랐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민선5기 1차년도를 시작하며 주목한 부분은 첫째, 장애인 당사자의원의 선출이 의정모니터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다. 민선5기에 선출된 장애인 당사자의원은 광역의회가 20명(2.67%), 기초의회가 42명(1.45%)으로 총 62명(1.67%)이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비율로 따지면 1%이상을 차지하는 장애인 당사자 의원들의 활약은 어떠한지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둘째로 주목해 볼 대목은 민선4기에 나타났던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민선5기에도 계속될 것인지의 여부다. 지난 민선4기에 ‘장애인복지법’ 개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정되면서 자연스럽게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정책이나 조례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의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발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추세를 민선5기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민선5기 1차년도 광역의회 모니터링은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로,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 단원들이 회의록을 전수조사 하였다. 모니터링 대상 회의록은 지난 2010년 07월부터 2011년 06월까지 각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의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의정모니터링에서 정한 장애인관련 발언은 ‘한 회의에서, 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한 의원이, 한 가지 분야에 대해 질의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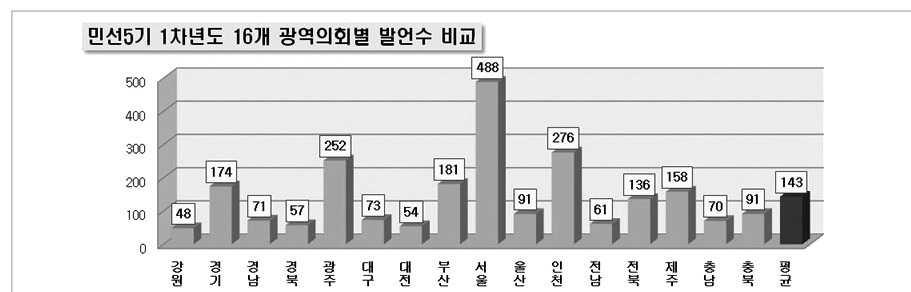
발언통계(발언수와 회의록수)

〈표1〉 민선5기 1차년도 광역의회 지역별 발언 관련 통계(의원별/회의별)

| 지역명 | 정책 발언수 | 소속 의원수 | 발언 의원수 | 소속의원 발언율 (%) | 소속의원 1인당 평균발언수 | 발언의원 1인당 평균발언수 | 전체 회의록수 | 발언발생 회의록수 | 발언발생 빈도(%) | 전체 회의록당 발언수 | 발언발생 회의록당 발언수 |
|------|-----------|-----------|-----------|--------------------|----------------------|----------------------|------------|--------------|---------------|-------------------|---------------------|
| 강원 | 48 | 47 | 17 | 36.17 | 1.02 | 2.82 | 187 | 18 | 9.63 | 0.26 | 2.67 |
| 경기 | 174 | 131 | 65 | 49.62 | 1.33 | 2.68 | 416 | 86 | 20.67 | 0.42 | 2.02 |
| 경남 | 71 | 59 | 24 | 40.68 | 1.20 | 2.96 | 204 | 28 | 13.73 | 0.35 | 2.54 |
| 경북 | 57 | 63 | 15 | 23.81 | 0.90 | 3.80 | 223 | 19 | 8.52 | 0.26 | 3.00 |
| 광주 | 252 | 26 | 24 | 92.31 | 9.69 | 10.50 | 177 | 49 | 27.68 | 1.42 | 5.14 |
| 대구 | 73 | 34 | 15 | 44.12 | 2.15 | 4.87 | 221 | 36 | 16.29 | 0.33 | 2.03 |
| 대전 | 54 | 26 | 15 | 57.69 | 2.08 | 3.60 | 151 | 30 | 19.87 | 0.36 | 1.80 |
| 부산 | 181 | 53 | 30 | 56.60 | 3.42 | 6.03 | 213 | 55 | 25.82 | 0.85 | 3.29 |
| 서울 | 488 | 114 | 72 | 63.16 | 4.28 | 6.78 | 366 | 120 | 32.79 | 1.33 | 4.07 |
| 울산 | 91 | 24 | 19 | 79.17 | 3.79 | 4.79 | 213 | 41 | 19.25 | 0.43 | 2.22 |
| 인천 | 276 | 38 | 30 | 78.95 | 7.26 | 9.20 | 292 | 80 | 27.40 | 0.95 | 3.45 |
| 전남 | 61 | 62 | 23 | 37.10 | 0.98 | 2.65 | 172 | 26 | 15.12 | 0.35 | 2.35 |
| 전북 | 136 | 43 | 35 | 81.40 | 3.16 | 3.89 | 241 | 58 | 24.07 | 0.56 | 2.34 |
| 제주 | 158 | 48 | 28 | 58.33 | 3.29 | 5.64 | 347 | 68 | 19.60 | 0.46 | 2.32 |
| 충남 | 70 | 45 | 19 | 42.22 | 1.56 | 3.68 | 217 | 28 | 12.90 | 0.32 | 2.50 |
| 충북 | 91 | 35 | 24 | 68.57 | 2.60 | 3.79 | 190 | 38 | 20.00 | 0.48 | 2.39 |
| 광역총계 | 2,281 | 848 | 455 | 53.66 | 2.69 | 5.01 | 3,830 | 780 | 20.37 | 0.60 | 2.92 |
| 광역평균 | 142.7 | 53.0 | 28.4 | 53.66 | 2.69 | 5.01 | 239.4 | 48.75 | 20.37 | 0.60 | 2.92 |

〈표1〉에서 보듯이, 민선5기 1차년도 광역의회의 장애인정책 발언 수는 서울(488건), 인천(276건), 광주(252건) 순으로 많았고, 강원(48건), 대전(54건), 경북(57건) 순으로 적은 발언이 적었다. 16개 시도의회들의 연평균 장애인 관련 발언은 142.7건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 민선4기 평균 97.1건보다 45.6건 늘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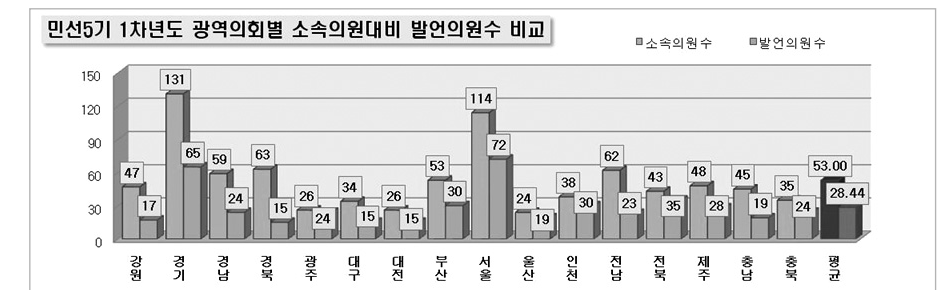
〈그림1〉 민선5기 1차년도 16개 광역의회별 발언수 비교



민선5기 1차년도 광역의회에 발언이 많은 서울과 인천, 광주 모두 장애인 당사자 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특히, 인천과 광주는 의회 소속의원수가 평균 이하인데도 발언수가 많아 의원들의 참여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민선4기 평균과 민선5기 1차년도 평균을 비교해 볼 때, 민선4기에 비해 민선5기에 발언수가 크게 40여건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민선4기 기간 동안 장애인당사자 의원인 황화성 의원의 활약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냈던 충청남도의 하락이 눈에 띈다. 이것은 장애인 당사자의원이 의회 등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장애인 정책 활성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소속의원 대비 발언 의원 비율은 광주가 92.31%로 의원들의 장애인 관련 정책 발언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북(81.40%), 울산(79.1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관련 정책 발언 참여율이 낮은 지역은 경북(23.81%), 강원(36.17%), 전남(37.10%) 순이다. 민선4기 평균과 비교했을 때 발언 비율이 약 8%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발언 참여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 민선5기 1차년도 광역의회별 소속의원 대비 발언의원수 비교



〈표2〉 민선4기 광역의회 평균 발언관련 통계(의원별/회의별)

| 지역명 | 정책 발언수 | 소속 의원수 | 발언 의원수 | 소속의원 발언율 (%) | 소속의원 1인당 평균발언수 | 발언의원 1인당 평균발언수 | 전체 회의록수 | 발언발생 회의록수 | 발언발생 빈도(%) | 전체 회의록당 발언수 | 발언발생 회의록당 발언수 |
|--------------|-----------|-----------|-----------|--------------------|----------------------|----------------------|------------|--------------|---------------|-------------------|---------------------|
| 민선4기 광역평균 | 97.1 | 45.67 | 20.86 | 45.70 | 2.13 | 4.61 | 189.2 | 42.30 | 22.36 | 0.51 | 2.33 |
| 민선5기 1차년도 | 142.7 | 53.0 | 28.4 | 53.66 | 2.69 | 5.01 | 239.4 | 48.75 | 20.37 | 0.60 | 2.92 |

민선5기 전체 회의록 수는 3,830개로 이 중 780개(20.37%)의 회의록에서 장애인 관련 발언이 나왔다. 민선5기 1차년도 회의록 수는 민선4기 평균보다 50건 정도 회의록 수가 많았다. 회의록수가 증가하여 발언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체회의록당 발언수와 발언발생회의록당 발언수가 민선4기 광역평균 보다 민선5기 1차년도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나 회의가 증가한 것과 상관없이 민선5기 1차년도의 발언 수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발언분야통계

〈표3〉 광역의회 분야별 발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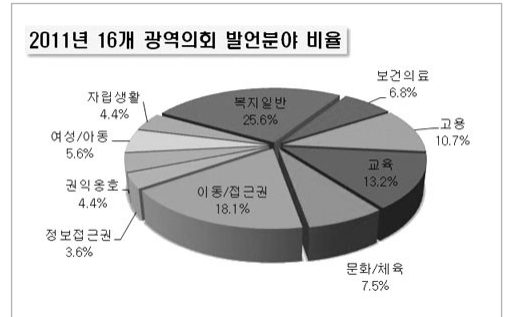
| 지역명 | 분야(건) | | | | | | | | | | 계 |
|------|-------|------|-------|-------|-------|--------|-------|------|------|------|--------|
| | 복지일반 | 보건의료 | 고용 | 교육 | 문화/체육 | 접근/이동권 | 정보접근권 | 권익옹호 | 여성 | 자립생활 | |
| 강원 | 16 | 6 | 4 | 7 | 4 | 4 | 4 | 1 | 2 | 0 | 48 |
| 경기 | 48 | 8 | 33 | 27 | 12 | 25 | 7 | 8 | 5 | 1 | 174 |
| 경남 | 12 | 2 | 13 | 5 | 13 | 15 | 2 | 0 | 6 | 3 | 71 |
| 경북 | 28 | 0 | 9 | 9 | 0 | 4 | 1 | 4 | 1 | 1 | 57 |
| 광주 | 87 | 14 | 7 | 41 | 17 | 36 | 7 | 4 | 22 | 17 | 252 |
| 대구 | 12 | 0 | 15 | 5 | 6 | 27 | 1 | 6 | 0 | 1 | 73 |
| 대전 | 9 | 3 | 13 | 12 | 1 | 13 | 0 | 0 | 2 | 1 | 54 |
| 부산 | 63 | 20 | 22 | 12 | 4 | 30 | 3 | 6 | 10 | 11 | 181 |
| 서울 | 101 | 41 | 24 | 52 | 26 | 120 | 29 | 29 | 28 | 38 | 488 |
| 울산 | 10 | 3 | 10 | 19 | 5 | 27 | 4 | 6 | 6 | 1 | 91 |
| 인천 | 46 | 17 | 35 | 23 | 41 | 56 | 6 | 14 | 22 | 16 | 276 |
| 전남 | 22 | 2 | 6 | 8 | 4 | 6 | 3 | 4 | 1 | 5 | 61 |
| 전북 | 42 | 16 | 11 | 32 | 21 | 5 | 4 | 3 | 2 | 0 | 136 |
| 제주 | 52 | 13 | 24 | 17 | 2 | 31 | 9 | 9 | 0 | 1 | 158 |
| 충남 | 18 | 4 | 14 | 10 | 7 | 3 | 1 | 2 | 9 | 2 | 70 |
| 충북 | 19 | 7 | 5 | 21 | 8 | 11 | 2 | 4 | 12 | 2 | 91 |
| 광역총계 | 585 | 156 | 245 | 300 | 171 | 413 | 83 | 100 | 128 | 100 | 2,281 |
| 광역평균 | 36.56 | 9.75 | 15.31 | 18.75 | 10.69 | 25.81 | 5.19 | 6.25 | 8.00 | 6.25 | 142.56 |

광역의회별 분야별 발언수를 살펴보면, 복지일반이 5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근이동권 413건, 교육 300건, 고용 24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언 순위는 지난 민선4기 광역의회에서 보여준 순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장애인 관련 정책에 있어 논의가 많이 되는 분야가 매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매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인식개선과 관련 있는 권익옹호 분야와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와 관련 있는 자립생활 분야에 발언이 여전히 낮은 순위로 나타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의원별 발언 수

발언의원 상위10명으로는 〈표4〉와 같이 나타났다. 박순남 의원(인천, 민주당)이 86건으로 가장 많이 발언하였고, 82건을 발언한 이상호 의원(서울, 민주당)이 2위, 이경혜 의원(부산, 한나라당)과 정병문 의원(광주, 민주당)이 77건으로 3위, 고만규 의원(서울, 한나라당)이 39건으로 5위를 하였다. 상위 5명의 의원들 모두 장애인 당사자 의원이다. 상위 5명 의원의 발언 수는 361건으로 전체발언수(2,281건)에 15.8%에 해당한다. 1년 동안 1건 이상 장애인 정책 관련 발언을 한 의원이 455명인데, 이 중 1.1%에 해당하는 의원이 전체 발언의 15.8%를 차지한 것으로, 장애인 당사자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이다. 장애인 당사자 의원들은 장애인 정책 관련 발언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장애인 관련 차별조례를 개정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림2〉 민선5기 1차년도 광역의회 발언분야비율



〈표4〉 민선5기 1차년도 발언의원 순위(상위10명)

| 순위 | 지역명 | 질이자 | 당적 | 발언수 |
|----|---------|-----|-------|-----|
| 1 | 인천광역시 | 박순남 | 민주당 | 86건 |
| 2 | 서울특별시 | 이상호 | 민주당 | 82건 |
| 3 | 부산광역시 | 이경혜 | 한나라당 | 77건 |
| 3 | 광주광역시 | 정병문 | 민주당 | 77건 |
| 5 | 서울특별시 | 고만규 | 한나라당 | 39건 |
| 6 | 광주광역시 | 강은미 | 민주노동당 | 38건 |
| 7 | 제주특별자치도 | 박주희 | 국민참여당 | 37건 |
| 8 | 서울특별시 | 김영철 | 한나라당 | 30건 |
| 8 | 인천광역시 | 노현경 | 민주당 | 30건 |
| 8 | 제주특별자치도 | 박희수 | 민주당 | 30건 |

의원 발의 장애인 관련 조례 제·개정현황

16개 광역의회 의원발의 장애인 관련 조례 제·개정현황은 〈표5〉와 같다.

〈표5〉 16개 광역의회 의원 발의 장애인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

| 구분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 합계 |
|-----|----|----|----|----|----|----|----|----|----|----|----|----|----|----|----|----|----|
| 조례수 | 0 | 2 | 1 | 1 | 6 | 2 | 3 | 2 | 3 | 2 | 6 | 4 | 1 | 3 | 1 | 0 | 37 |

민선5기 1차년도에는 총 37개의 장애관련 조례가 제·개정되었다. 민선4기 4년간 87개의 장애인 관련 조례가 제·개정된 것과 비교했을 때, 원 구성 첫 해에 많은 수의 조례들이 제·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광주와 인천에서 6건의 조례가 제·개정되었고, 강원과 충북에서는 단 한 건의 조례도 제·개정되지 않았다. 16개 광역의회에서 제정된 조례 중 눈에 띄는 것은 '중증장애인의원에대한의정활동지원조례안'으로 경기, 광주, 부산, 인천 4곳에서 제정되었다. 서울시의회를 제외하고 의원활동에 대한 보좌제도가 없는 지방의회에서 의원활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의원의 의원활동을 지원하는 바람직한 조례로 여겨진다.

또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2010년 전라남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등에관한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한 것이 민선5기 의회에서 이어졌다.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제주 총 5곳에서 제정되었고, 전라남도에서는 전면개정안을 내고 원안가결 하였다. 조례의 제정으로 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상담, 실태 조사 등으로 장애인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6〉 16개 광역의회 의원 발의 장애인관련 조례 제·개정 내용

| 번호 | 지역 | 제안일자 | 의안명 | 제안자 |
|----|----|-----------|--|-------------------------|
| 1 | 경기 | 10.09.17 | 경기도의회중증장애인의원에대한의정활동지원조례안 | 송순택 외 43명 |
| 2 | 경기 | 11.03.28 |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 이삼순,이강림,손호성 외 22명 |
| 3 | 경남 | 11.04.01. | 경상남도신장장애인혈액투석비지원조례안 | 김오영,원경숙,강종기,정연희,정재환,홍순경 |
| 4 | 경북 | 11.05.30 | 경상북도공공시설내장애인등에대한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구자근외 21명 |
| 5 | 광주 | 11.06.02 |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문상필,정병문 |
| 6 | 광주 | 11.06.02 | 광주광역시의회중증장애인의원에대한의정활동지원조례안 | 김보현 |
| 7 | 광주 | 11.04.05 | 광주광역시장애인생활지원금지급에관한조례안 | 문상필,정병문 |
| 8 | 광주 | 11.02.28 | 광주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 손재홍,정현애 |
| 9 | 광주 | 11.02.28 | 광주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문상필,정병문 |
| 10 | 광주 | 11.02.01 | 광주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 | 문상필,정병문 |
| 11 | 대구 | 11.04.29 | 대구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증진에관한조례안 | 김의식,김대성 |
| 12 | 대구 | 11.06.03 |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김대성,오철환 |

〈표6〉 16개 광역의회 의원 발의 장애인관련 조례 제·개정 내용

| 번호 | 지역 | 제안일자 | 의안명 | 제안자 |
|----|----|----------|------------------------------|-----------------------|
| 13 | 대전 | 10.11.29 |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조례안 | 한영희,이영옥 외 9명 |
| 14 | 대전 | 11.06.17 | 대전광역시의회중증장애인의원의정활동지원조례안 | 안필응 외 5명 |
| 15 | 대전 | 11.06.20 | 대전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안 | 한영희 외 10명 |
| 16 | 부산 | 11.03.11 | 부산광역시의회중증장애인의원에대한의정활동지원조례안 | 이진수 외 11명 |
| 17 | 부산 | 11.05.12 | 부산광역시립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이경혜 외 12명 |
| 18 | 서울 | 10.11.18 | 서울특별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 이상호 외 34명 |
| 19 | 서울 | 10.11.18 |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안 | 이상호 외 20명 |
| 20 | 서울 | 10.11.18 | 서울특별시수화통역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김생환 외 24명 |
| 21 | 울산 | 10.10.05 | 울산광역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검사에관한조례안 | 이은주 외 11명 |
| 22 | 울산 | 11.02.24 |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 박영철 외 5명 |
| 23 | 인천 | 10.10.04 |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물우수구매촉진조례안 | 박승희,박순남,이용범 |
| 24 | 인천 | 10.11.19 | 인천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 신현환,강병수,이용범 외 13명 |
| 25 | 인천 | 10.11.25 | 인천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 조영홍,김영분,박승희 외 11명 |
| 26 | 인천 | 10.11.26 |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박순남,박승희,안영수 외 11명 |
| 27 | 인천 | 10.12.03 |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박순남,이상철,강병수,윤재상 외 12명 |
| 28 | 인천 | 11.04.04 | 인천광역시의회중증장애인의원의정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 전원기 외 7명 |
| 29 | 전남 | 10.11.01 | 전라남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증진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 | 강성휘 외 18명 |
| 30 | 전남 | 10.11.15 | 전라남도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 허강숙 외 22명 |
| 31 | 전남 | 10.11.15 | 전라남도장애인생산물우수구매촉진조례안 | 허강숙 외 21명 |
| 32 | 전남 | 11.06.02 | 전라남도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조례안 | 허강숙 외 21명 |
| 33 | 전북 | 11.06.20 | 전라북도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 최진호 외 10명 |
| 34 | 제주 | 10.10.07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 위성곤 |
| 35 | 제주 | 11.04.06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 안동우 |
| 36 | 제주 | 11.05.20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안 | 윤두호,고충홍 |
| 37 | 충남 | 11.02.21 | 충청남도장애인생산물우수구매촉진조례안 | 유병국,박상무,김득응 외 20명 |

장애인 관련 우수 조례 BEST 7

글. 김익수 / 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09년부터 전국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자치법규 모니터링은 애초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장애인 차별조항 개정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런데 2010년부터는 모니터링 영역을 확대하여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현황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 4월 19일에는 '전국조례제개정추진연대'(이하 '전국연대')를 출범시켜 장애인 차별 조항 개정 및 장애인 조례 제정확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때문에 올해 전국조례제개정추진연대 활동결과 보고대회(12.1)에서는 7개광역시 자치법규의 장애인 차별조항 및 전국 장애인 조례 제정현황이 발표되었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제정된 장애인 조례에서 선별한 장애인 당사자에게 유익한 조례들을 발표하는 코너가 추가되었다. 이른바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7대 조례' 선정이 그것이다.

I. 장애인조례의 의미와 선정기준

1. 전국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현황 파악

장애인 조례의 전국 제정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국 자치법규 제정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전수검사 결과 현재 전국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예규) 수는 92,371건(2011년 4월 현재)으로 나타났다. 이중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는 총 848건이 발견되었다. 이 848건을 7개 주제(이동·편의, 소득보장, 장애여성·아동, 복지시설,

복지일반, 문화체육, 자립생활)로 분류하여 7대 조례를 선별하였다.

2. 모범(우수)조례가 아닌 '장애인 조례'를 선정한 이유

당초 장애인을 위한 우수조례 혹은 모범조례를 선별하려 했으나 선별과정에서 '7대 조례'로 명칭을 달리하게 되었다. '모범'(혹은 '우수')는 특정 그룹에서 가장 돋보이는 대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이하 '장애인조례') 848건을 동일 그룹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바, 한 그룹에 포함된 조례들은 그 내용들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현재 전국에 22건이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일별하면 그 편제와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 조례 내용과 구성이 유사한 것은 조례가 최초로 제정되면 타지자체에서도 선례를 참고하여 제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조례제정 실상을 볼 때 특정 조례 그룹에서 우수 혹은 모범 조례를 고르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분류된 모든 조례들이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기존 848건의 장애조례에서, 장애인에게 유익한 조례는 무엇인지 선정기준을 제시하여 선별한 후 선발된 조례에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조항, 부족한 내용의 확대강화, 보완개선택 등 정책 제안을 통해 특정 조례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그 조례군의 모범 혹은 우수조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게 유익한 7개의 장애인 조례를 선별하고 아래와 같이 그 제정현황과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3. 장애인 조례 선정 기준

다음은 이번 7대 장애인 조례를 선정하는데 기준으로 삼았던 항목들이다. ①실익보장(조례에 지원액을 명기하여 당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조례), ②기초육구 충족(장애인의 기초육구(이동/접근권 등)를 보장하는 조례), ③인권보장(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조례), ④자립생활 보장(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활동보조 추가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정책을 지원하는 조례)이다.

II. 장애인조례 선정

1. 장애인 가정/여성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선정이유

출산과 육아에서 비장애인보다 심신의 고통과 경제적 고충이 큰 장애인을 지원한다. 조례에 지원액수가 명시돼(평균 50~100만원 내외) 있어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다. 출산을 가치 있는 사회적 활동으로 인정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 확대에 기여한다.

□ 전국현황

장애인 가정/여성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제정현황 (2011.11.현재)지역

| 지역 지자체수 | 서울 26 | 부산 17 | 대구 9 | 인천 11 | 광주 6 | 대전 6 | 울산 6 | 경기 32 | 강원 19 | 충남 17 | 충북 13 | 전남 23 | 전북 15 | 경남 19 | 경북 24 | 제주 1 | 계 |
|------------|----------|----------|---------|----------|---------|---------|---------|----------|----------|----------|----------|----------|----------|----------|----------|---------|----|
| 제정수 | 5 | 1 | - | 2 | 1 | 2 | 1 | 15 | - | 3 | 3 | 2 | 5 | 1 | 2 | - | 43 |
| 지원 구분 | 여성 5 | - | - | 1 | 1 | - | - | 8 | - | 3 | 3 | 2 | 3 | - | 2 | - | 28 |
| | 가정 - | 1 | - | 1 | - | 2 | 1 | 7 | - | - | - | - | 2 | 1 | - | - | 15 |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3곳에서 '장애여성' 또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2011. 11월 현재) 처음 제정된 것은 2006년 12월 26일 충남 천안시장이 발의하여 통과된 '천안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였다. 천안시의 입법에 영향을 받아 충청남도는 2009년 4월 15일에 별도로 「충청남도여성장애인출산및영아양육지원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 조례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장애여성(가정) 출산 지원 조례이다. 43곳 가운데 28곳은 '장애여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15곳은 '장애인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모'와 장애인 '부'에 대하여 차별적 기준을 두고 있는 지자체는 5곳,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10곳이다. 거주 제한 기준은 대체로 6개월부터 1년이다. 출산지원금액은 100만원 내외가 가장 많지만, 최소 30만 원('부'가 장애등급 3~4급인 경우)부터 최대 300만 원(인천광역시 남구, 여성장애인 장애등급 1~2급)까지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있다. '다녀출산장려지원조례' 같은 다른 법규에 의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여성(가정)출산지원금을 이중으로 지급받는 게 가능한 지자체가 더 많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중지급을 금지·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가령 「용산구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에관한조례」는 「용산구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 정책제언

1) 장애 '여성' 지원조례 No! -- 장애 '가정' 지원조례 Yes!

현행 지원조례 43건 가운데 장애 '여성' 지원조례와 장애 '가정' 지원조례의 비율이 7:3 정도이다. 즉, 아버지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사회가 남녀평등, 특히 가사노동과 양육을 부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법적·관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조항은 시대에 맞지 않고 남녀 역차별의 소지마저도 있다. 따라서 향후 제정되는 출산지원조례는 장애 '여성' 지원조례가 아니라 장애 '가정' 지원조례로 발의되어야 한다.

2) 저소득층 지원조례 No! -- 등록장애인 지원조례 Yes!

출산지원조례 대부분은 특별한 자산조사 없이 해당 지자체에 일정기간(6개월~12개월) 거주한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들만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출산지원은 '장애로 인한' 출산 및 양육의 어려움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이므로 자산의 많고 적음이 지급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기왕에 지급대상을 제한한 조례들은 서둘러 개정할 필요가 있고, 향후 새로 제정될 조례에서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3) 이중지원 불가/제한 No! -- 이중지원 가능 Yes!

지자체에 따라서는 기존의 보편적인 출산지원 관련 조례와 장애여성(가정) 출산지원조례 둘 다 있을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자체가 더러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다시피 장애여성(가정) 출산지원조례는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나 고통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출산지원조례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여성(가정) 출산지원금조례는 유사한 다른 조례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제한 없는 이중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4) 출산지원조례 Yes! --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 Absolutely Yes!

물론 출산지원조례만 있어도 장애인 부모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양육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비장애인 부모가 장애 아이를 양육하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데, 장애인 부모가 비장애 아이를 양육하면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것은 어딘가 불공평해 보

인다. 따라서 출산지원조례를 계속 제정하는 한편, 여건이 되는 지역의 지방의회라면 출산뿐만 아니라 양육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제정목적 : 저출산 No!/ 장애인의 삶의 질 Yes!

장애인 출산지원조례의 탄생 배경에는 한국의 극심한 저출산 현실이 있다. 출산장려책은 장애인의 삶의 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인구증산책에 장애인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출산장려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기 결정권 확대라는 인권 차원에서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삶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조례 제정의 주목적이어야 한다. 때문에 조례 제정 목적에 출산장려 등의 언급을 명기하지 말아야 한다.

2.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 선정이유

장애인 이동권 운동으로 인해 2000년 중반까지 전동휠체어/스쿠터 보급이 확산되었다. 전동휠체어 보급으로 장애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 호전, 외출의 기회 증가, 일상생활의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전동기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의 보험 비급여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전동휠체어의 내구연한은 6년이지만 배터리는 1~2년, 컨트롤러 및 모터는 3~6년, 타이어 등은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데 비용부담(모터: 30~50만원, 타이어: 3~4만원, 컨트롤러: 50~60만원, 배터리: 16~25만원, 충전기: 약 14만원)이 크다. 전동휠체어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급여로,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전동휠체어는 중증 장애인들의 교통수단으로,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 운행도중 충전해야 하지만 야외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전동휠체어로 외출 시 배터리 소진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실제로 방전되면 수리센터로 연락해도 장시간 길거리에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상기 조례는 이처럼 장애인 당사자의 수리비 경감과 야외(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접근/이동편의를 도모하므로 장애인의 경제적 이익과 접근/이동권을 강화하고 있다.

□ 전국현황

(2010. 6. 30 기준)

| 지자체 | 조례명(제정일) | 주요내용 | | | |
|-----------------------------------|------------------------------------|------|------------|----------|-------|
| | | 설치 | 수리센터 | | 충전소설치 |
| | |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 서울시 | 강남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수리지원에관한조례(09.5.1) | 강제 | 수급자 차상위 | 50만 ↓ 전액 | 강제 |
| | 양천구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 관한조례(09.5.11) | 임의 | 수급자 | 20만 ↓ 전액 | 임의 |
| | | | 차상위 | 20만 ↓ 전액 | |
| | | | 일반 | 10만 ↓ 전액 | |
| 영등포구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 에관한조례(08.4.24) | 임의 | 수급자 | 20만 ↓ 전액 | 임의 | |
| | | 차상위 | 20만 ↓ 전액 | | |
| | | 일반 | 10만 ↓ 반액 | | |
| 중구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 한조례(09.1.09) | 임의 | 수급자 | 20만 ↓ 전액 | 임의 | |
| | | 차상위 | 20만 ↓ 전액 | | |
| | | 일반 | 10만 ↓ 반액 | | |
| 부산시 | 영도구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 관한조례(09.7.20) | 임의 | 수급자 | 20만 ↓ 전액 | 임의 |
| | | | 차상위 | 10만 ↓ 반액 | |
| 대구시 | 남구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 한조례(10.4.12) | 임의 | 수급자 | 20만 ↓ 전액 | 임의 |
| | | | 차상위 | 20만 ↓ 전액 | |
| | | | 일반 | 10만 ↓ 반액 | |
| 광주시 | 광주광역시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 원에관한조례(10.1.15) | 임의 | 수급자 | 20만 ↓ 전액 | 임의 |
| | | | 차상위 | 20만 ↓ 전액 | |
| | | | 일반 | 10만 ↓ 반액 | |
| 충남 | 홍성군장애인보조기구수리비용지 원에관한조례(09.7.30) | 임의 | 수급자 | 20만 ↓ 전액 | 임의 |
| | | | 차상위 | 10만 ↓ 반액 | |
| | | | 일반 | 10만 ↓ 반액 | |
| 전북 | 전라북도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 에관한조례(09.7.31) | 임의 | 수급자 | 20만 ↓ 전액 | 임의 |
| | | | 차상위 | 20만 ↓ 전액 | |
| | | | 일반 | 10만 ↓ 반액 | |
| 전남 | 목포시장래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 관한조례(08.12.29) | 임의 | 수급자 | 20만 ↓ 전액 | 강제 |
| | | | 차상위 | 20만 ↓ 전액 | |
| | | | 일반 | 10만 ↓ 반액 | |
| 경북 | 경산시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 관한조례(09.10.19) | 임의 | 수급자 | 30만 ↓ 전액 | 강제 |
| | | | 차상위 | 30만 ↓ 전액 | |
| | | | 일반 | 15만 ↓ 반액 | |
| 경남 | 양산시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 관한조례(09.12.30) | 임의 | 수급자 | 20만 ↓ 전액 | 임의 |
| | | | 차상위 | 20만 ↓ 전액 | |
| | | | 일반 | 10만 ↓ 반액 | |

전동기기 관련 조례가 확산되어야 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 및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 12곳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속하고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광역 단위 조례가 있는 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가 유일하다.

□ 정책제언

1) 휠체어수리센터의 설치

전동기기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라 할지라도 지자체가 지원 또는 위탁하여 운영되는 휠체어 수리센터가 상당수 있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방식보다 약간의 본인 부담금을 부과시키더라도 서비스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2) 전동기기 야외 충전소 설치

전동기기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 12곳 가운데 충전소 설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한 곳은 경북 경산시, 서울시 강남구, 전남 목포시 3곳뿐이고 나머지는 임의규정이다. 설치장소는 이용자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소 가령, 지하철 역사, 은행 365일 코너, 편의점 등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충전소를 설치할 때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단체의 의견을 물어 보아야 한다.

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선정이유

중증장애인이 시설 및 제한된 실내생활에서 벗어나 스스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욕구 충족을 도모하는데 조례의 제정 목적이 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활동보조인 지원(및 추가지원)정책을 꾀한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연계와 더불어 장애인 자립생활의 확대강화를 위해 지역 내 자립생활지원센터사업을 지원 하는 법률적 근거가 된다.

□ 전국현황

| 지자체 (지자체수) | 서울 (26) | 부산 (17) | 대구 (9) | 인천 (11) | 광주 (6) | 대전 (6) | 울산 (6) | 경기 (32) | 강원 (19) | 충북 (13) | 충남 (17) | 전북 (15) | 전남 (23) | 경북 (24) | 경남 (19) | 제주 (1) | 계 |
|---------------|------------|------------|-----------|------------|-----------|-----------|-----------|------------|------------|------------|------------|------------|------------|------------|------------|-----------|----|
| 제정수 | 8 | 2 | - | 2 | 1 | 1 | - | 4 | 1 | - | 4 | 1 | 1 | 2 | 1 | 1 | 29 |

전국 244개 지자체 중 29곳(제정율 12%)에 불과해, 타 지역의 제정이 시급하다. 16개 광역시도(시청/도청)에서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은 대구,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남도청 이상 6곳이다. 2006년 8월 15일 광주광역시의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29곳 자치단체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이하 '자립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가운데 9곳(31%)이 광역단체이다.

□ 정책제언

1)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 이념 구현

자립생활 이념과 장애인 당사자성이 확실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자립생활지원센터의 개념정의에는 "①장애인 소비자가 운영하고(Consumer-controlled), ②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며(Community-based), ③모든 장애 영역을 포괄하는(Cross-disability), ④ 비수용시설(Non-residential)이자 비영리(Non-profit) 기관" 이상 3가지가 기본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

센터운영 조항은 센터의 주도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단체 성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따라서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적어도 ①센터의 장과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하고 운영위원 과반수는 장애인 당사자일 것, ②센터 운영의 민주주의와 자율성 보장할 것, ③자치단체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고 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 이 세 3가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필수!

자립생활을 지원하려면 중증장애인의 그 실태조사부터 하는 것이 기본이다. 실태를 파악해야 거기에 따라 자립생활 지원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실태조사 시기는 매1년~4년 등 지역마다 다양하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실태조사 조항을 만들지 않을 경우 자립생활 지원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사업 또는 전시성 사업에 그칠 공산이 크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자립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특히,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다각도의 주거지원

주거지원 조항은 비록 임의 규정이라 하더라도, 중증 장애인들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주거권' 을 요구할 때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1970

년대 초 독립된 주거 공간을 확보하려는 미국 중증 장애인들의 투쟁 과정에서 자립생활운동이 태동하였다는 사실에서 보여 주듯이, 주거는 자립생활의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주거 지원 조항은 자립조례에서 필수 항목이 되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임대)과 주택 구입·임차·개보수 비용, 체험론, 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다가구 및 부도매입 임대주택, 주택개조, 보증금·임대료·관리비 지원 등 다양한 관련 지원책을 도모해야 한다.

4) 탈시설 정책 강화

시설퇴소 희망 장애인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활동보조시간 추가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설 생활인과 종사자에 대한 자립생활과 인권 교육 실시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5) 활동보조인 보험가입 보장

활동보조서비스는 사실상 자립생활운동과 함께 발전한 개념이지만, 오늘날 한국에서는 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이 이 서비스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자립생활지원조례에서나마 활동보조서비스가 센터의 고유사업임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활동보조인의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 상해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활동보조서비스 직종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 예컨대 “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은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고, 단체장은 이에 대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등의 조항이 요구된다.

6)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영역별 구체화

대체로 조례들에는 ‘활동보조서비스’, ‘주거서비스’, ‘동료상담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지원’, ‘지역사회서비스 및 정보제공’, ‘보장구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여성 출산 및 육아지원’, ‘이동 지원’, ‘인권침해 예방교육’, ‘취업교육 및 구직 지원’, ‘연구 및 조사 사업’, ‘권익옹호 사업’ 등도 추가되어야 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 선정이유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과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자체 스스로의 정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지역 내 장애인인권센터 설치를 통해 장애인인권신장에 기여한다. 장애인의 인권을 다룸으로써 인권보장 조례의 영역별 분화의 계기가 마련된다.

□ 전국현황

| 구분 | 제정지자체(2011.10.현재) |
|--------|---|
| 광역시(8) |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강원/전남/제주 |
| 기초(14) | 서울(강북구, 양천구)/광주(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대전(서구)/울산 (북구)/경기(군포, 성남, 하남)/전남(나주, 목포, 순천) |

2010년 5월부터 제정이 시작돼 2011년 10월 현재 22개가 제정되어 최근 관련조례의 제정추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초 제정된 전남 조례는 제정 추진 단계에서 1년여 동안 조사·연구와 설문조사,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청원 조례안이 작성되었고, 지방의회가 조례시행기관인 자치단체와 청원단체들의 의견수렴과 합의를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조례의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전라남도도 2010년 12월 27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하였으며, 이후 다른 조례들 역시 전라남도 조례를 기초로 하여 조례 제정이 이뤄지고 있다.

□ 정책제언

1) 인권증진 No, 인권보장 Yes

22개의 조례명을 보면 19개가 ‘인권보장’을 명기하고 있다.(그밖에 인권증진, 권리증진 등) 향후 제정 예정인 조례들도 ‘인권보장’을 택해야 한다. 증진보다 보장이 보다 적극적 개념이다. 헌법도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하고 있는 “인권보장”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어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에게는 의무를, 국민에게는 권리를 부여하여 인권에 있어 국민이 국가에 대해 명백히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다. 때문에 국가의 행정집행기관인 지자체는 국민의 인권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조례명도 증진이 아니라 보장이어야 한다.

2)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필수!

조례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통상 5년마다) 및 시행계획(연간) 수립이 없다면 조례는 실효성 없는 선언적 구호에 그칠 수 있다. 자립생활 지원조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실태조사 시 장애인권 분야의 지표를 개발하여 실태조사에 포함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 인권보장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실태조사 실시의 의무화와 더불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인권보장위원회 구성에 당사자 주도권 적용

22개의 조례 중 13개가 인권보장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의 과반수이상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과반수 이상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 장려하는 것도 아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판단과 감수성에서 당사자의 관점에 따라 주도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여 당사자 참여 확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미규정 조례에 대한 개정 확대

기본계획의 수립과 절차, 정책의 분석과 평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홍보,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행위 신고, 실태조사 등으로 구성되는 이 조례의 정책안은 인권센터 설립을 통해서 추진 가능하다. 인권센터의 설치를 규정하는 인권보장 조례는 22곳 중 단 7개에 불과하여 나머지 조례들에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개정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권센터 설치를 규정한 7개 조례 중 센터 설치가 강제규정인 곳은 단 2지역(전라남도, 전라남도 순천시)에 불과하다.

5) 관내 공무원에 대한 연간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 의무화

관내 소속 공무원(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초·중·등 교육기관 등) 대상의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여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에서의 장애인차별 금지(장차법 제26조/제27조)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5.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

□ 선정이유

법정 장애 유형 15가지 가운데 신장장애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장애이다.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들의 추가비용은 평균 155,400원인데 비해, 신장장애인들의 경우 이보다 2배 이상인 343,900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한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농어촌 지역 신장장애인들은 정기적인 투석 치료를 위해 먼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부담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5-2-9-3〉 신장장애의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여부

(단위: %, 명)

| 구분 | 남자 | 여자 | 전체 |
|-------|--------|--------|--------|
| 예 | 76.7 | 78.0 | 77.2 |
| 아니오 | 23.3 | 22.0 | 22.8 |
| 계 | 100.0 | 100.0 | 100.0 |
| 전국추정수 | 28,611 | 21,035 | 49,646 |

[출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2008년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서 신장장애로 투석을 받는 신장장애인은 무려 5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농촌지역 거주 신장장애인들은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스런 삶을 영위하고 있다. 또 조사에 따르면 신장장애는 만 10세 이후부터 발생(투석 또는 신장이식을 시행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0대에서 60대에 걸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장애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례제정을 통한 지원으로 신장장애인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영위를 보장해야 하며 이 조례의 전국적 제정확산이 실로 시급하다.

□ 전국현황

전국 244개 지자체중 경상남도(2011.05.12. 제정)만 유일하게 제정하고 있다.

□ 정책제언

1) 지원대상자 확대 및 지원액수 명시

경상남도 조례에는 2급 이상의 신장장애인 중에서 수급자, 보훈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그리고 혈액투석이 필요한 사람 중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혈액투석비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서두에서 밝혔듯 신장장애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가장 많

이 들고 1~2급 중증 비율이 가장 많은 장애유형이다. 따라서 예산확대가 시급하다. 출산지원조례처럼 최저한도의 지원예산액을 명시하여 지원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출산 지원조례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 것처럼 혈액투석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원에서 등급별 제한을 풀고 모든 등급별 지원이 필요한 항목과 등급별 신장장애인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충이 무엇인지 실태를 조사해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2) 실태조사의 의무화

경상남도 조례는 실태조사를 임의규정으로 명시했는데 지원대상이 소수일지라도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치료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는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 전국의 5만에 이르는 투석 장애인들(2008년 조사 참조)을 244개 지자체에 균등 배치하면 1개 지자체당 약 205명 꼴 이다. 따라서 투석장애인이 최소 200명 이상 거주할 수 있음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6.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선정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 전국현황

전국에 단 1건(「대전광역시동구장애인웹접근성향상에관한조례」, 2009. 07. 06 제정)이다. 현재 장애인 웹접근 보장의 상위 법률상 근거는 「정보화 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이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조례가 1년 반 만에 22개의 제정을 보인데 비해 웹접근조례는 유관 조례나 정책에서 상기 조항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지자체나 의원들이 조례제정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웹접근 실태조사 보고서(2010)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 웹접근성 수준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웹접근성을 6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244개 지자체 중 '매우 우수'와 '우수'에 해당하는 A, B 등급은 고작 35개에 그쳐 전체지자체의 14%에 불과했

다. 심지어 16개광역의회중 A등급은 전혀 없고 B등급만 고작 1개 지역뿐이다. 때문에 「정보화 기본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해당 지자체들의 논변은 실상과는 괴리가 있다. 이렇듯 공공기관의 열악한 장애인 웹접근성 실태를 볼 때, 조례제정으로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강제적으로 추동하고 지속적인 정비보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 정책제언

1) 웹 사이트 신규구축, 개선 및 유지조항 삽입

조례제정 시에 '웹 사이트 신규구축, 개선 및 유지' 조항을 삽입하여 웹 사이트의 신규 구축 혹은 기존 웹 사이트의 개선 등을 할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표준으로 제정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 개발 후 웹 접근성 전문 장애인기관의 감리를 실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원의 웹 접근성 품질마크 혹은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의 웹 접근성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웹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평소에도 웹 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웹 사이트에 대한 유지 보수시 반영해야 한다.

2)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세부사항

공기관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①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② 장애인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및 향상 방안, ③ 접근성이 용이한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 구비, ④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⑤ 웹 사이트를 관리하는 전산담당자의 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3) 예산 확보규정 명시

'지자체장은 웹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웹 사이트 신규 구축, 개선 및 유지 보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등의 예산 확보규정을 포함하여 조례시행의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7.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선정이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

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개선 및 확충, 주변 보행환경 개선, 대중교통 및 특별교통수단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강화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법률이 제정된 지 6년이 흐른 현재(2011년)에도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구조 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실태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낳고 있다.

□ 전국현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2011.9월 기준)

| | 광역시도(지자체수) | 제정건수 |
|----|------------|------|
| 1 | 서울특별시(26) | 1 |
| 2 | 부산광역시(17) | - |
| 3 | 대구광역시(9) | 1 |
| 4 | 인천광역시(11) | 1 |
| 5 | 광주광역시(6) | 1 |
| 6 | 대전광역시(6) | 1 |
| 7 | 울산광역시(6) | 1 |
| 8 | 경기도(32) | 19 |
| 9 | 강원도(19) | 1 |
| 10 | 충청남도(17) | 2 |
| 11 | 충청북도(13) | 4 |
| 12 | 전라남도(23) | 2 |
| 13 | 전라북도(15) | - |
| 14 | 경상남도(19) | 15 |
| 15 | 경상북도(24) | - |
| 16 | 제주도(1) | 1 |
| 계 | | 50 |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2011.9)

| | 광역시도(기초지자체수) | 제정건수 |
|----|--------------|------|
| 1 | 서울특별시(26) | 1 |
| 2 | 부산광역시(17) | 1 |
| 3 | 대구광역시(9) | - |
| 4 | 인천광역시(11) | - |
| 5 | 광주광역시(6) | - |
| 6 | 대전광역시(6) | - |
| 7 | 울산광역시(6) | - |
| 8 | 경기도(32) | - |
| 9 | 강원도(19) | - |
| 10 | 충청남도(17) | 8 |
| 11 | 충청북도(13) | 1 |
| 12 | 전라남도(23) | 4 |
| 13 | 전라북도(15) | 4 |
| 14 | 경상남도(19) | 15 |
| 15 | 경상북도(24) | 1 |
| 16 | 제주도(1) | - |
| 계 | | 35 |

※ 지자체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제정된 조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과 둘째,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이동실태조사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넓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좀 더 좁은 차원으로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직접적인 관리,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16개 광역시도 중 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도는 부산, 전북, 경북 3곳임. 전국 총 50건 제정중이다. 가장 먼저 제정된 곳은 제주도(2007년 5월)이고, 가장 늦은 곳은 2011년 8월에 조례가 제정된 경상남도이다.

②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6개 지자체 중 대구광역시 등 총 8곳에 본 조례가 전혀 없음, 전국 35건 제정으로 제정이 극도로 빈약하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본청 중 본 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부산광역시뿐이다.(2006년 5월 제정) 기초지자체 중 가장 먼저 제정된 곳은 경상남도 사천시(2001년 5월 제정)이고, 가장 늦은 곳은 전라남도 무안군으로 2011년 7월에 제정되었다.

□ 정책제언

1) 조례 제정을 통한 정책 의지 확립

이 조례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에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운영규모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정책의지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결과 16개 광역시도 중 경상남도가 1위이며(경상남도의 특별교통수단 의무대수 달성율은 100%가 넘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율이 각각 78.9%(15곳 제정)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조례의 제정율 또한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편이다. 즉, 경상남도는 조례를 바탕으로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많은 기초지자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와 관련된 조례가 부재한 상황이다. 타 지자체에서는 경상남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고 정책시행에 나서야 한다.

2) 예산(재정)지원 의무조항 삽입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제정(59.3%)이 경상남도 다음으로 높음에도 예산 지원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어 각지자체의 교통약자 이동실태가 열악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동편의 증진 조례가 정책 입안의 실효성을 갖는 조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예산 지원의 의무를 강제 조항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시로 진입이 안 되거나 경기도 기초지자체간 운행이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라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기초지자체별 장애인콜택시 확대가 시급하다.

3)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의무대수 달성 년도 삽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일지라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의무대수가 충족되어 있는 지자체는 극히 일부이다. 이는 “의무대수 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료된다. 따라서 1, 2급 장애인의 수에 따라 지정된 지자체의 의무대수를 달성시킬 수 있는 년도를 삽입함으로써 단계적으로 관련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률 제9868호) 주요 내용 삽입

지자체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는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야한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의 대상, 이동편의지원센터 설치, 보행우선구역의 설치 등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각 지자체의 조례에는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자체마다 이동편의 실태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균등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조례에 삽입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과 주민참여예산제도

글: **현근식** / 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2011년 중앙정부의 장애인예산은 1조 2821억원¹⁾이다. 사회복지예산이 86조 3929억원이라고 하는데 그중 약 1.5%가 장애인예산인 셈이다. 등록된 장애인 인구가 전 국민의 5%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한정된 장애인예산조차 결코 대다수의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곳에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버린 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분노할만한 일이다.

과거 정부에서 장애인을 위한 혜택의 하나로 지원했던 장애인차량 LPG보조금 예산은 2006년 당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지원 예산 총액 5,270억 원의 52%인 2,715억 원으로 점점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었다. 이 LPG보조금 예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른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사업을 새롭게 수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당시 장애인차량 LPG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자기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사회적으로 빈곤층에 속하는 자가용을 소유하지 못한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이 보조금의 혜택을 일원도 받지 못했다. 더구나 장애인차량 LPG보조금 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장애인 본인에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명의로 빌려 실지로 그 LPG 차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 가족이나 비장애인들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문제점이 그것이다. 2009년부터 LPG보조금 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되었고 그 예산은 대부분 장애인의 보편적 복지에 쓰이게 되었다.

현재에도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반하는 사례는 매우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생활시설 예산이다. 2010년 기준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전국 장애인 생활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4,000억원²⁾이다. 더구나 이는 생활시설 입소 장애인들의

1) 『중앙정부 장애인 복지재정 연구 보고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10년. p12~13.
2) 모니터링리포트 Vol3.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11. p2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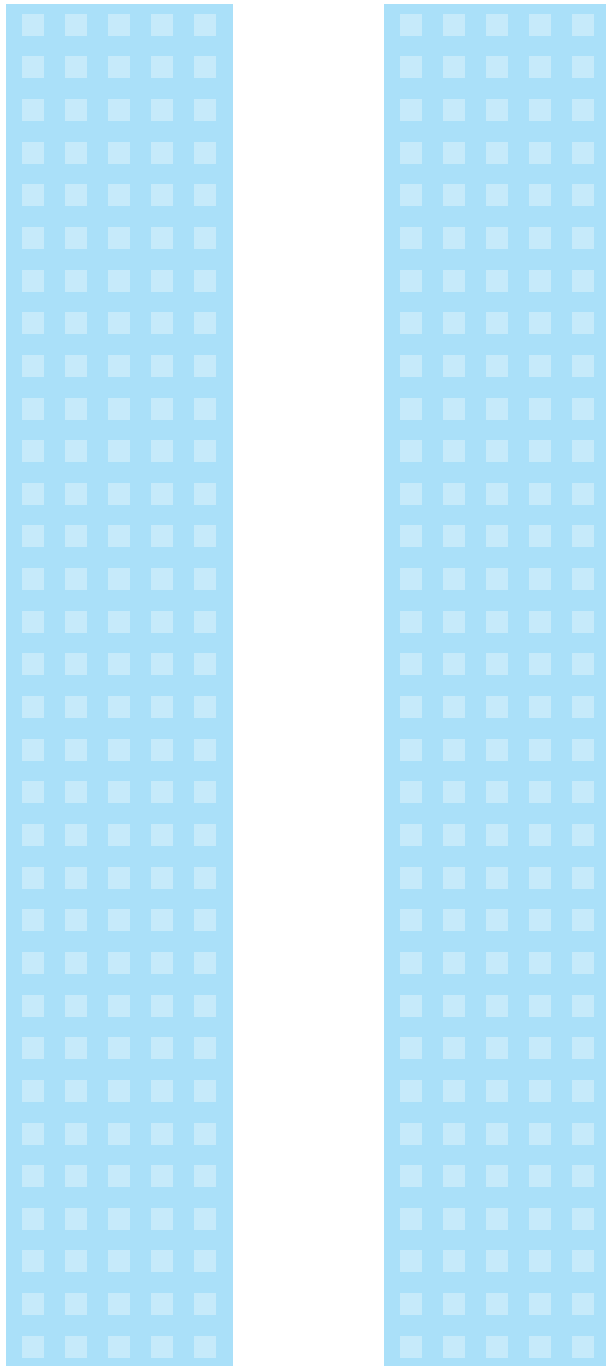
기초생활보장수급비와 프로그램 등 행사비는 제외된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만 통계 낸 것이니 실제로는 훨씬 많은 예산을 쓰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어마어마한 생활시설 예산은 장애인의 욕구에 의해 쓰이고 있는 것인가? 아마 장애인 당사자들은 대부분 고개를 가로저을 것이다. 이는 생활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이상이 주거 및 제반서비스가 갖춰지면 시설을 나오고 싶다고 답했다는 사실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생활시설 정책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 사회의 배제와 분리에 입각한 시설중심의 복지 정책 때문에 나타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장애인 복지에 대한 투입 예산은 있지만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채우기에는 부족하거나 일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할 때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이 문제시 되곤 한다.

장애인계는 수도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결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거나 또는 아예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이는 과거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가 팽배해 있던 행정부의 태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장애인계와는 다르게 시민사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예산참여라는 방법을 통해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예산 편성을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민이 예산 편성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³⁾.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의 가장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먼저 '주민예산참여제도'는 주민 대표들이 예산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공무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내면서 예산안을 만드는 제도이다. 예산제도가 확립된 이후 각국의 예산운영은 국민의 대리인인 행정부(관료)와 입법부(의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대의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관료와 의원들의 지대추구 행위와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주도의 예산편성과 의회중심

3) 김석진,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9년



의 예산심'의 틀을 깨지는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다⁴⁾. 이러한 대의 민주주의에 예산 운영 방식을 깬 제도가 바로 '주민예산참여제도'이다.

이 제도는 브라질의 뽀투알레그리 시에서 1989년부터 최초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참여정부 지방분권추진 로드맵'과 '재정·세계개혁 로드맵'에서 이 제도의 도입계획을 세웠고, 행정자치부 또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 편성제도의 정착을 제시하였다. 이에 발맞춰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조례 제정 2004년 3월 15일)에서 처음 도입하여 시작되었다. 장애인 정책모니터링센터의 조사결과 2011년 6월 현재 약 114곳의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가지고 있다(표1참조). 실제로 의미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소수이나 최근 그 제도의 도입은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앞선 시행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아파트단지나 초등학교 입구의 소방도로 개설 ▲비가 오면 물이 넘쳐흐르는 골목길의 배수구 설치 ▲어린이공원 조성 등 생활과 밀접한 사업 제안을 하여 예산에 반영시키는 등 작지만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다⁵⁾.

〈표 1〉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현황표

(2011년 6월 15일)

| 지자체명 | 시도 분청 | 기초 지자체 | 합계 | 지자체명 | 시도 분청 | 기초 지자체 | 합계 |
|-------|----------|-----------|----|------|----------|-----------|----|
| 서울특별시 | | 5 | 5 | 경기도 | | 15 | 15 |
| 부산광역시 | | 2 | 2 | 강원도 | | 8 | 8 |
| 대구광역시 | | 6 | 6 | 충청북도 | | 9 | 9 |
| 인천광역시 | | 3 | 3 | 충청남도 | | 4 | 4 |
| 광주광역시 | 1 | 5 | 6 | 전라북도 | | 9 | 9 |
| 대전광역시 | | 4 | 4 | 전라남도 | | 22 | 22 |
| 울산광역시 | | 2 | 2 | 경상북도 | | 8 | 8 |
| 제주도 | | - | - | 경상남도 | 1 | 10 | 11 |
| 총계 | | | | | 114건 | | |

4) 나중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브라질·미국·한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2호, 2004년

5) 최인욱, 『예산교육자료-예산 알고 참여하기 첫걸음』, 좋은예산센터,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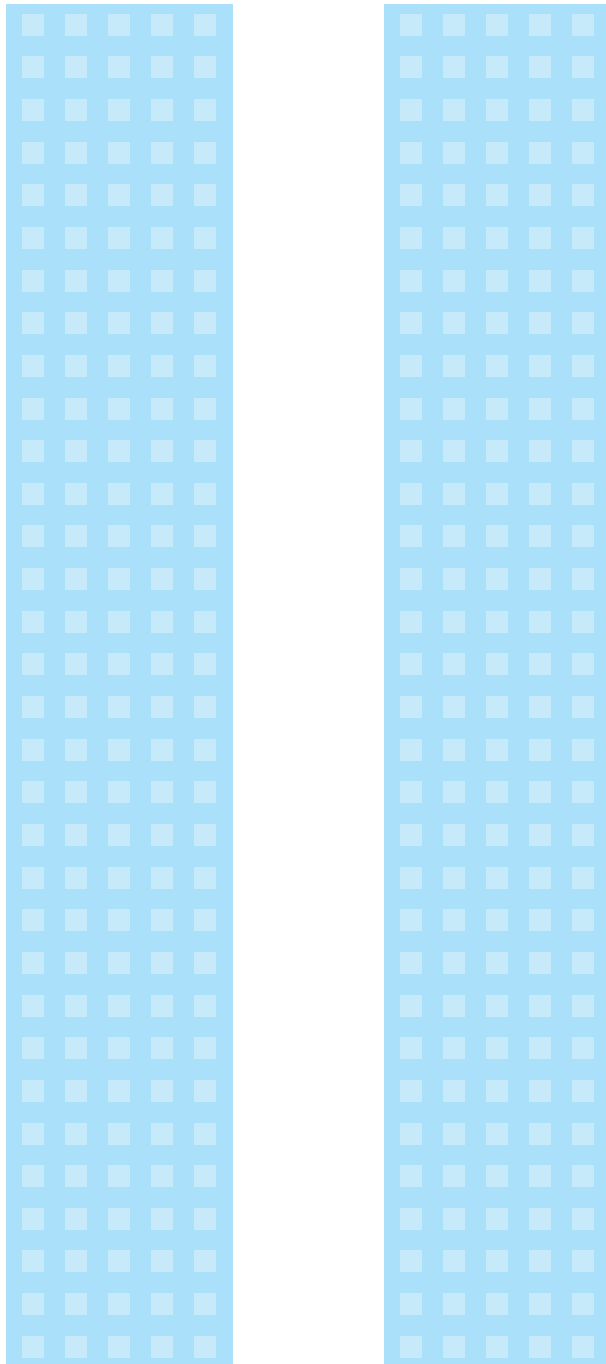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 같은 활성화는 위에서 말했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그에 대한 보완의 기능을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기존의 선거로만 시민의 의지를 표출할 수 있었던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내 정치제도에서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민의 직접 참여의 통로를 열어준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를 참여 민주주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시민사회의 민주주의의 주체들이 참여를 통해 그 체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참여 민주주의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장애인의 삶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1976년 UN에서는 장애인 선언을 통해 모든 장애인이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참여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법과 제도를 통해 각 사회영역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참여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세월동안 장애인들은 사회적 차별의 굴레에 썩여 정상적인 사회참여가 불가능했다. 특히 고용에서의 차별에 의해서 장애인들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사회참여를 한다 해도 극히 일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장애인들은 이 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배제와 분리를 겪으면서 사회참여의 통로가 모두 차단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보통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회적 존재로서 끊임없이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의 과정이 진행되며 그를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무엇보다 장애인에게 있어 사회참여는 중요하다⁶⁾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장애인의 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질 및 삶의 만족을 이루게 하며 이는 개인과 사회적 환경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낸다. 즉 개인과 사회적 환경의 최적의 상태를 이루어 낸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수립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들었다. 전국에 제정된 114건(시행규칙 26건까지 포함하면 140건)의 주민참여예산조례 중에서 3개 기초지자체가 주민참여위원 구성 시에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참여 조항을 명시했다(표2 참조). 강원도 속초시와 원주시가 조례의 조항으로 사회적 약자

6) 박춘숙, 『장애인의 인터넷활용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 대학원, 2008년.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고, 경기 수원시는 시행규칙에 장애인 참여 조항은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참여 조항은 당사자들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 내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주는 적극적인 노력이며, 또한 장애인이 정책의 핵심인 예산 편성에 실질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는 의무 조항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목표로 둔 제도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에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사회적 약자 참여 조항 사례

| 자치법규 | 사회적 약자 참여 조항 | 비고 |
|-----------------|---|------|
| 강원도 속초시 운영 조례 | 제11조(설치 및 구성)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 제11조(설치 및 구성)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조례 |
| 강원도 원주시 운영조례 | 제11조(구성).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조례 |
| 경기도 수원시 조례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3조 ② 조례 제10조제4항의 위원은 지역성, 전문성이 비슷하게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반드시 포함한다. | 시행규칙 |

장애인 예산 편성 참여의 성패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얼마나 이러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행정부(집행부)의 전문성과 의회의 팽팽한 견제력 등 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첨예한 대립은 상대적으로 비전문적이며 힘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힘에 겨운 갈등일 수 있다. 보통의 주민이 이렇진대 사회적 약자는 더욱더 유명무실한 존재로 취급될 수 있다. 그들은 주민참여위원으로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고 머리수만 채우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사회 구성원들의 진정한 사회참여는 결국 적극적인 열의와 행동으로 쟁취될 수 있다. 나아가 이 제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 할당으로서만 장애인이 참여할 것이 아니라, 대개의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개모집할 예정이므로 지역의 장애인당사자들은 개인 자격으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전국에서 들불처럼 설립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센터라 함)에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처해야 한다. 단지 I센터의 예산 편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의 중증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는 II센터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모두에게 사회참여와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나가게 해주는 좋은 제도이다. 이러한 시민참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또한 지역의 장애인 정

책과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모범음식점의 장애인 접근성

글. 강민수 / 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요즘 음식문화의 트렌드는 '무엇을 먹을지'에서 '어떻게 먹느냐'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고객들은 외식을 할 경우 배고픔을 달래는 실용적 가치만을 추구해 음식점과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나 행복감과 같은 쾌락적 가치도 함께 추구한다¹⁾. 음식의 종류뿐만 아니라 음식점의 분위기와 서비스를 따지고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은 식사 때면 '무엇을 먹을지' 보다는 '어느 식당으로 가야할지'를 걱정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음식점이 입구에 계단이나 턱이 있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008년 편의시설 실태조사²⁾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주출입구에 접근로가 설치된 비율은 82.6%로 높게 나타났다지만,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적정설치율은 59.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일반음식점 중에서 5% 이내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을 누린다. 예를 들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

1) 외식상황을 고려한 수단-목적 사슬모형에 따른 고객의 추구가치에 대한 연구, 함문훈, 2011)

2) 2008년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칭함)에 근거하며, 일반음식점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90평)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그 수가 60,672개로 전체 음식점의 10.4%에 해당하며, 2008년 식품안전청이 조사한 결과 일반음식점은 584,294개로 나타났다. 이 중 89.6%(523,622개)의 음식점은 편의증진법에서 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점검대상도 아닌 실정이다.

선용자,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출입·검사 면제,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권장 등이다. 이런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모범음식점은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 즉, 음식의 맛과 위생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춰 음식문화를 선도해야 한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최소접근성을 기준으로 모범음식점을 모니터링했다. 전국의 모든 모범음식점을 조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어, 서울을 비롯한 6대광역시의 각 2개자치구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이들 모범음식점을 조사해서 장애인 접근성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정책제안을 할 목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2. 조사개요

1) 조사방법

본 조사는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요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했다. 모니터요원은 각 조사대상 지역에서 공개모집으로 선발되어, 모니터링 목적과 방법, 조사표 작성법 등을 교육 받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니터요원이 직접 방문하기에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모범음식점에 조사의 취지를 알리고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홍보하였다. 이후 모니터요원이 일정기간 모니터링한 후 작성된 조사표를 정리하여 모니터링센터에 제출했다. 모니터링센터는 각 지역에서 취합된 조사표를 정리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2)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2010년 12월말까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의 지방자치단체 각 2개 자치구가 지정한 모범음식점 2,305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표 1〉 각 지방자치단체별 모범음식점 조사대상(2010.12말)

| 구 분 | 구 분 | 조사 대상수 |
|-----|------------|--------|
| 서울 | 중 구 (230) | 493 |
| | 영등포구 (263) | |
| 부산 | 부산진구 (130) | 243 |
| | 해운대구 (113) | |
| 인천 | 연수구 (111) | 251 |
| | 서 구 (140) | |
| 대구 | 남 구 (120) | 240 |
| | 서 구 (120) | |
| 광주 | 서 구 (187) | 396 |
| | 북 구 (209) | |
| 대전 | 서 구 (283) | 447 |
| | 유성구 (164) | |
| 울산 | 남 구 (131) | 235 |
| | 중 구 (104) | |
| 합 계 | | 2,305 |

※참고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 홈페이지

3) 조사문항

모범음식점 조사는 최소접근성을 기준으로 했다. ‘최소접근성 기준’이란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정 규정에 미달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접근기준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법정 개념이 아니라 모니터링센터가 이번 조사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모니터링센터는 ①주출입구 접근 가능성 ②입식탁자 구비 ③화장실 이용 가능성을 최소접근성 기준으로 삼았다.

〈표 2〉 조사문항

| 구 분 | 조사문항 |
|---------|---------------------|
| 주출입구 형태 | 주출입구의 형태는? |
| | 주출입구의 형태가 턱이라면 단차는? |
| 내부환경 | 입식테이블의 구비여부는? |
|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테이블인가? |
| 화장실 접근성 | 화장실의 위치는? |
|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인가? |
| 기타 | 특이사항 |

3. 모니터링 결과

1) 각 지역별 조사 현황

전체 2,305개 중 1,952개가 조사되어, 조사율이 전체 평균 84.6%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1,952개의 모범음식점이며, 각 지역별 조사율은 서울이 9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울산이 91.1%이고, 대구는 4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 지역별 조사 현황

| 구분 | 조사대상수 | 조사결과수 | 조사율(%) |
|----|-------|-------|--------|
| 서울 | 493 | 468 | 94.9 |
| 부산 | 243 | 217 | 86.5 |
| 인천 | 251 | 241 | 96 |
| 대구 | 240 | 114 | 47.5 |
| 광주 | 396 | 319 | 80.6 |
| 대전 | 447 | 379 | 84.8 |
| 울산 | 235 | 214 | 91.1 |
| 합계 | 2,305 | 1,952 | 84.6 |

2) 주출입구 형태

모범음식점의 조사된 1,952개소 중에서 중복으로 응답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조사된 모범음식점 중에서 주출입구가 계단이나 턱으로 되어있어 휠체어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곳이 64.6%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모범음식점의 주출입구 형태

| 구분 | N | 케이스 퍼센트 |
|--------------|------|---------|
| 주출입구가 평면 | 429 | 22.1% |
| 주출입구에 턱이 있음 | 599 | 30.9% |
| 주출입구가 계단 | 736 | 38.0% |
| 주출입구에 경사로 있음 | 301 | 15.5% |
| 합계 | 2065 | 106.5% |

※ 참고 : 조사대상은 1,939곳이었으나, 중복응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전체 응답빈도는 2,065로 나타나며, 각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의 합은 106.5%로 나타난다.

3) 주출입구 단차 현황

조사된 모범음식점 중에서 주출입구가 턱으로 되어있는 곳의 단차를 조사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단차의 평균은 13.16cm이고, 표준편차는 8.286cm로 조사되었으며, 단차의 최소값은 1.0cm 최대값이 50.0cm로 나타났다.

〈표 5〉 주출입구 단차 현황

| 구분 | N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주출입구의 형태가 턱이라면 단차는? | 504 | 1.00 | 50.00 | 13.16 | 8.286 |
| 유효수(목록별) | 504 | | | | |

4) 지역별 주출입구 단차 현황

조사된 지역의 주출입구 단차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울산은 단차의 평균이 6.72cm, 표준편차가 3.68cm, 최소값이 5.0cm, 최대값이 20.0cm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대구는 단차의 평균이 17.85cm, 표준편차가 10.467cm이며 최소값이 3.0cm이고 최대값이 45.0cm로 높게 나타났다.

〈표 6〉 지역별 주출입구 단차 현황

| 구분 | N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서울 | 78 | 1.00 | 30.00 | 10.60 | 6.309 |
| 부산 | 30 | 5.00 | 40.00 | 14.27 | 8.921 |
| 인천 | 66 | 2.00 | 40.00 | 16.61 | 9.293 |
| 대구 | 53 | 3.00 | 45.00 | 17.85 | 10.467 |
| 광주 | 122 | 3.00 | 35.00 | 11.28 | 5.946 |
| 대전 | 112 | 2.00 | 50.00 | 14.91 | 8.464 |
| 울산 | 31 | 5.00 | 20.00 | 6.72 | 3.68 |

5) 주출입구의 계단

조사된 모범음식점 중에서 주출입구가 계단으로 되어있는 곳을 조사한 결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계단의 평균은 5.2개, 표준편차는 5.2개로 조사되었으며, 계단의 최대값은 30개로 나타났다.

〈표 7〉 주출입구 계단 현황

| 구분 | N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주출입구 계단 수 | 275 | 1.00 | 30.00 | 5.29 | 5.193 |
| 유효수 (목록별) | 275 | | | | |

6) 모범음식점 내부의 입식테이블 유·무

모범음식점 내부에 입식테이블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1,924개소 중에서 입식테이블이 있는 곳이 47.8%(920개소), 입식테이블이 없는 곳이 52.2%(1004개소)로 조사되었다. 이는 모범음식점의 52.2%를 휠체어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입식테이블 유무

| 구분 | | 빈도 | 유효 퍼센트 |
|--------------|----|-------|--------|
| 입식테이블의 구비 여부 | 있다 | 920 | 47.8 |
| | 없다 | 1,004 | 52.2 |
| | 합계 | 1,924 | 100.0 |

7) 모범음식점 내부의 입식테이블 이용가능성

모범음식점 내부에 있는 입식테이블의 이용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입식테이블을 이용 할 수 있는 곳이 57.0%(8,363개소), 입식테이블을 이용할 수 없는 곳이 43.0%(631개소)로 조사되었다.

〈표 9〉 입식테이블 사용가능

| 구분 | | 빈도 | 유효 퍼센트 |
|--------------------|-----|-------|--------|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테이블인가? | 예 | 836 | 57.0 |
| | 아니오 | 631 | 43.0 |
| | 합계 | 1,467 | 100.0 |

8) 화장실의 위치

모범음식점의 화장실 위치를 조사한 결과 〈표 10〉와 같이 나타났다. 화장실이 식당 내부에 있는 곳이 68.8%(1,318개소), 식당 외부에 있는 곳이 31.2%(597개소)로 조사되었다.

〈표 10〉 화장실 위치

| 구분 | | 빈도 | 유효 퍼센트 |
|-----------------|-------|-------|--------|
| 해당 업소 화장실의 위치는? | 식당 내부 | 1,318 | 68.8 |
| | 식당 외부 | 597 | 31.2 |
| | 합계 | 1,915 | 100.0 |

9) 화장실의 사용 가능

모범음식점의 화장실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51.8%(863개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이 48.2%(802개소)로 조사되었다.

〈표 11〉 화장실 사용 가능

| 구분 | | 빈도 | 유효 퍼센트 |
|--------------------|-----|-------|--------|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인가? | 예 | 863 | 51.8 |
| | 아니오 | 802 | 48.2 |
| | 합계 | 1,665 | 100.0 |

4. 나가는 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살펴보았을 때 휠체어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모범음식점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 주출입구의 형태, 입식테이블의 유무, 그리고 화장실 이용 가능성의 최소접근성 기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모범음식점을 이용할 수 없다.

각 지역별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조사대상 모범음식점 1,658개 중에서 82.5%(1,367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99.1%(111개)로 가장 높게 나왔고, 대전이 94.8%(111개), 울산이 91.9%(194개)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67.7%(316개)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모범음식점도 10곳 중에서 7곳은 휠체어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2〉 모범음식점 장애인 접근성 현황

| 구 분 | 이용불가 (①or②or③) | ①주출입구형태 | | ②입식테이블 없음 | ③화장실 이용 불가 |
|-----|------------------------|----------------------|----------------------|------------------------|----------------------|
| | | 입구 턱 | 계단 | | |
| 전 체 | 82.5% (1,367/1,658) | 29.0% (599/2,065) | 35.6% (736/2,065) | 52.2% (1,004/1,924) | 48.2% (802/1,665) |
| 서울 | 67.7% (316/467) | 17.3% (81/467) | 31.3% (146/467) | 32.3% (151/468) | 40.7% (190/467) |
| 부산 | 71.2% (159/212) | 28.8% (76/264) | 35.2% (93/264) | 31.6% (67/212) | 54.7% (116/212) |
| 인천 | 90.1% (201/223) | 30.3% (79/261) | 41% (107/261) | 66.8% (153/229) | 57.1% (128/224) |
| 대구 | 99.1% (111/112) | 44.2% (53/120) | 25.8% (31/120) | 67.3% (76/113) | 99.1% (111/113) |
| 광주 | 87% (275/316) | 37.2% (124/333) | 32.1% (107/333) | 66.6% (211/317) | 9.1% (29/317) |
| 대전 | 94.8% (111/117) | 34.6% (141/407) | 36.4% (148/407) | 56.3% (209/371) | 69.5% (82/118) |
| 울산 | 91.9% (194/211) | 21.1% (45/213) | 48.8% (104/213) | 64% (137/214) | 68.2% (146/214) |

다시 말하면 중증장애인들은 10곳 중에서 8곳의 모범음식점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모범음식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장애인 편의 시설 부분'을 평가점으로 반영해야 한다. 현재의 점수표에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부분이 점수로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부가점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서 평가점에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을 배점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둘째, 많은 수의 일반음식점에 장애인 편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편의증진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300제곱미터(90평)이상으로 되어있는 기준을 200제곱미터나 100제곱미터로 강



화해야 한다. 이렇게 편의증진법이 개정되면 일반음식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도 늘어날 것이다.

셋째,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부분에 입식테이블을 포함해서 규정해야 한다. 입식테이블은 중증장애인이 휠체어나 전동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다. 장애인은 입식테이블에서 자존감을 유지하며 식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에 입식테이블을 의무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한다.

장애인인 내게? 또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란 무엇일까?

-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를 읽고

글. 김미주 /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베네딕테 이스타, 수잔 레인올스 휘테 지음
김도현 역음/그린비 출판사

장애인란 무엇인가. 내게 장애인란 어떤 의미인가. 오늘로 46년을 살아온 장애인당사자로서 내게 장애와 장애인이라는 화두는 가장 본질적이다.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는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그의 의료적 의미의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그러한 결함에 덧붙인 일련의 신화와 두려움 그리고 오해라고 답한다. 그리고 근대 서구의 장애담론을 넘어 장애를 새로운 시선으로 한국사회의 장애인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장애담론의 형성을 시도하면서 어느 문화든 장애가 인간의 자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문화적 환경에 따라 인간의 자격은 물론 자격을 얻는 방법도 다르며 장애인이 인간적 가치까지 손상된 것은 아니라고 역설한다.

이 책은 케냐, 소말리아, 우간다, 보츠와나, 터키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장애'라는 개념이 어떻게 규정되고(혹은 규정되지 않고) 인식되는지를 탐구하는 장애의 문화인류학 보고서이다. 이를 통해 생물학적 손상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진 '장애'가 '근대 서구'라는 특수한 사회적 맥락에서, 국가권력과 의료권력에 의해 구성된 개념임을 밝히고, 이 개념의 균열과 해체를 모색한다. 즉, 장애 개념에 균열을 내는 문화인류학 프로젝트인 것이다.

예를 들면 마사이족 사람이 장애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 하나의 용어는 올마이마(olmaima)이다. 글자 뜻 자체의 올마이마는 짧은 다리를 지니고 있으며 걷는 동안 몸을 심하게 흔들는 큰 갈색의 도마뱀으로, 어색하고 느리며 힘들게 걷는다. 이동성과 거주에서의 유연성이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유목사회에서 걸을 수 있는 능력과 장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은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올마이마라는 용어는 신체적 손상과 다른 이들처럼 이동하고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장애는 그 사회의 문화적 환경에 따라 표현되는 어떤 것이다.

오랫동안 의료인류학에서 대다수 연구들은 '치료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한 연구들은 질환이나 질병이라는 개념, 치료의 방식, 환자와 의사간의 상호작용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이제 장애학은 우리에게 의료적 접근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인간의 몸과 인격에 대한 문화적 가정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 내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질병 자체보다 그것이 갖는 장기적인 결과에 더 관심을 두며, 치료보다는 개인과 사회 양자 간의 적응에 더 관심을 둔다.

장애인들은 전과자, 민족적·인종적 소수자, 정신질환자와 마찬가지로 가치 절하된 지위를 접하고 있다. 신체적 손상을 지닌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회에 의해 부정적인 정체성을 부여받으며, 그의 사회생활 중 많은 부분은 이렇게 부여된 부정적 이미지와의 투쟁이다. 우리가 '낙인화'란 장애의 실체라기보다는 다소간 부산물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그의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그러한 결함에 덧붙인 일련의 신화·두려움·오해들이다.

한편 장애인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매체에 의해 특정한 이미지로 재현되기도 하는데, 그 중 한 예가 이 책의 종장에서 다루고 있는 조지프 메릭의 사례이다. 심각한 안면장애를 앓아 '엘리펀트맨'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던 그는 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락거리로 '전시'되었으며, 이후에도 영화나 연극, 책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이미지로 우리 앞에 '재현'되고 있다. 무수한 말들 속에서 정작 자신의 말을 잃은 조지프 메릭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주체적인 힘을 부정당한 채 특정 주체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재현되는 상황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의 재현은 비서구사회의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장애인들은 자선단체나 연구자들에 의해 '가족들에게 학대받는 이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 책은 그러한 이미지의 과장된 측면에 대해서도 조명하고 있다.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장애에 접근하고 있는 이 책을 통하여 살펴본듯듯이, 어떤 사회에는 장애정책의 시행을 위한 등급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회에는 '장애'라는 보편적인 범주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한 손상을 입은 사람이 모든 사회에서 배제되고 억압받는 것은 아니며, 이들의 정체성은 한 사회의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도 있다. 장애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방식은 이처럼 각 사회가 처한 맥락 속에서 다르게 구성되는 손상의 사례를 보여 줌으로써, 장애에 차별적인 우리 사회가 지금과는 충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재구성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를 통해 기존과 다른 '장애'의 의미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동시에, 차이가 차별로 구성되지 않는, '장애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는 기회를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장애인 차별 철폐를 넘어, 장애라는 '보편적' 범주의 철폐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사회에 '장애'는 무엇인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답해야 한다. 우리가 아는 '장애'는 진정 그 '장애'를 의미하는가?

시각장애인 시점으로 소통하다

- 영화 <블라인드>

글. 조현진 / J-net TV작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상영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 <블라인드>. ('배리어프리영화'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화면해설 서비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자막 서비스가 되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이다.) 그 현장에서 시각 장애인의 소리를 담아보았다.

“화면해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던 영화와는 다른 ‘스릴’ 같은 게 느껴져요. 막 몰입하게 된다고 할까요?”

“울트라 케인, 아이 폰을 사용하고 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하는 것... 모두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물건들이어서 현실적으로 와 닿았어요.”

영화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 관객들과 같이 놀라고 같이 웃는다. 이것은 배리어프리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어느새 그들은 시각장애인 주인공 수아와 공감하며 이야기에 빠져든다. 이렇게 공감을 얻은 영화의 밑바탕에는 시나리오를 완성하기까지 시각장애인의 생활을 섬세히 관찰했을 뿐만 아니라 감독이 시각장애인 체험전시에 가서 몸소 어둠 속을 경험한 일이 많은 부분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어둠 속에서 감독은 시각장애인을 왜 곡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장애인이 연민의 대상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며 시나리오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처음 쓴 시나리오의 조연이었던 시각장애인 수아는 주인공이 되었고 지금의 영화가 만들어졌다.

리얼리티가 있는 스릴러 장르로 재탄생한 영화 <블라인드>의 내용은 이렇다. 경찰관을 꿈꾸는 여주인공 수아(김하늘). 불의의 사고로 보육원에서 함께 지내던 동생을 잃고 자신의 시력도 잃고 만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흐른 후 경찰대학에 복학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온 수아는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게 된다. 모범택시인 줄 알고 탔던 그 차의 운전사는 알고 보니 연쇄살인범. 수아에게 커피를 먹이려다가 차로 사람을 치고 마는데...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을 통해 살인사건을 목격한 수아는 유일한 목격자로 경찰에게 진술하고, 또 다른 목격자 기섭(유승호)의 엇갈린 진술 속에서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나가는 이야기다.



<블라인드>는 지금까지 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와는 다르다. 이전 한국 영화에서 표현되었던 장애인은 연민의 대상이거나 무언가를 극복해야만 했다면 <블라인드>에서 시각장애인 수아는 장애와 상관없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그려진다.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초월적인 능력으로 무언가를 더 볼 수 있도록 그려졌던 시각장애인 캐릭터 대신 이 영화는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수아의 일상과 관계, 소통,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보여 주고자 한다. 그리고 연쇄살인마를 통해 진정한 장애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에 있는 것임을 말해준다.

필자는 공포물이라 하면 무서워서 눈을 감거나 귀를 막아버려 영화의 내용을 놓치곤 했는데 이번 영화는 보는 내내 손에 힘을 주어가면서도 끝까지 눈을 떼 수 없었다. 인상적인 장면은 살인자에게 쫓기는 지하철 추격신이다. 눈이 보이지 않는 수아와 그녀를 쫓는 살인범, 영상통화로 그녀의 눈이 되어주는 기섭, 그녀를 지키며 처절히 죽어갔던 안내견 슬기가 만들어내는 신은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감동을 가져다준다. 특히 동물연기자의 ‘김혜자’ 선생님께서 불리는 안내견의 연기가 눈여겨 볼만하다.

이 영화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사건의 목격자가 될 수 있나?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영화로 대중상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김하늘의 말이 답변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는 게 이번 연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보이는 세상이 아닌 느끼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보인다는 게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장애 이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12월 29일 본회의 통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대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가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해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장 및 종사장 등이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간 해당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인 설립허가는 취소하고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시설의 재설치·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설에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사의 인권교육이 강화되고,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되며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에이블뉴스」기사 인용)

전국장애인 조례제개정추진연대 2011 활동보고대회 개최

지난 12월 1일 “전국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집행위원장 이범재, 이하 ‘전국연대’)는 2011년 활동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연대(경기/대전/부산/서울/울산/전북/제주)는 지역별 조례제개정운동 성과와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활동을 전개한 전국연대의 대표적 성과는 거버넌스의 확대를 들 수 있다. 경기연대는 경기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경기도가 경기연대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내 자치법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조항 정비에 나선 것이 바로 그것. 서울연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지원 조항을 첨가시켰다. 또 울산연대는 개정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 장애인 고용차별 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타지자체 동조항 개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 조항은 무분별한 해촉 기준 때문에 장애인 고용 차별 등 오남용이 제기된 것으로 7개 광역시에만 천여 건이 넘는다. 부산연대는 4월 출범 후 6개월 만에 지역 내 장애인 차별조항의 35%를 개정하는 쾌거를 보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7개 광역시 장애인 차별조항 현황, 전국 장애인조례 제정현황

및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7대 장애인 조례’가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장애인 조례에는 ‘장애인 가정(여성)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가 선정되었고 제정현황 및 정책제언이 발표되었다. 발표를 맡은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김의수 선임연구원은 “향후 전개될 전국연대의 조례제개정운동은 7대 장애인 조례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7대 조례는 장애인 당사자를 직접 지원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조례들 가운데 뽑았다”고 그 선정 기준을 밝혔다.

‘도가니 효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없어져

영화 ‘도가니’ 상영을 계기로 성범죄 처벌 강도가 크게 강해진다.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성폭력 대책 추진 상황 및 보완 대책’을 12월 9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도록 친고죄 항목에서도 제외시켰다. 또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도 대폭 상향조정했으며, 합동대책반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1차레만 적발되더라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도 마련했다. 과거 성범죄에 연루돼 벌금형 이상을 확정 받은 교직원은 임용이 원천 차단된다. 현직에 있는 교직원은 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장애 학생 대상 성폭력 가해 학생은 일반 학생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 적용을 위한 학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합동대책반은 피해자 법률 지원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조력인제 도입을 추진하고 수화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메디컬투데이」기사 인용)

보건복지부,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9일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해, 10월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200개 장애인시설 중 155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범죄는 물론 시설 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 장애인생활시설 내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한 장애인시설 중에서는 시설 이용 장애인 인간의 성추행 6건과 성희롱 2건 등 성관련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손바닥 때리기, 밥 굶기기 등 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3건), 학대(2건), 체벌(7건) 등의 의심사례도 나타났다. 특히 남성장애인의 목욕과 옷 갈아입히는 업무를 여성종사자나 봉사자가 수행하도록 해, 장애인 당사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례도 2건이나 발생했다. 구더기가 있는 김치 독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 등 식자재 위생관리가 부적합한 사례는 5건이 발견됐다.

이와 같은 인권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시·도에서는 형사고발(4건)과 함께 시설 폐쇄(미신고시설 3건 폐쇄완료 등 14건)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또한 성추행 및 폭력 등의 사례의 경우에는 피해 장애인을 분리 조치함과 동시에 성상담 전문가의 심층 상담조사(6건)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시설 내부 고발 및 외부 감시체계 구축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의무화 ▲인권전문가 및 관련단체 참여하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6개 시·도) 설치 ▲인권실태 모니터링 및 보호 조치 ▲지역사회와의 소통 확대(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역 행사 등의 시설 장애인들의 참여를 통한 외부 인력과의 접촉 기회 유도) 등이다. 또한 성범죄 경력자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신고자 보호 및 관련 교육 의무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시설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길 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설 장애인을 위한 인권수첩 제작, 장애인·보호자 주기적 교육 실시,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시설 종사자에 인권상담 방법 및 침해사례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에이블뉴스」 기사 인용)

국가인권위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 사건' 선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가 지난 10년간 인권위가 권고한 차별 사건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은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 ▲크레파스 등 색 이름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 배제 ▲서울YMCA 여성회원의 총회 의결권 불허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임금 등 차별 ▲시 교육청의 전과를 이유로 한 공무원 합격 취소 ▲가사 전담 기혼 남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국내 체류기간을 이유로 한 결혼이주여성 보험가입 제한 등이다.

특히 이중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는 인권위 1호 진정 사건이다. 지난 1991년 11월 1일부터 제시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던 3급 장애인이 2001년 7월 23일 공석이 된 제천시 보건소장에 우선해 승진 임용될 자격을 갖추었으나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임용에서 배제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인권위는 법률상 우선적인 승진임용 대상자에 주어야 할 승진의 기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제천시장에게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는 인권위 제1호 진정이자 차별사건의 36%를 해당하는 장애차별로, 당시 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졌다”라면서 “진정인의 공개사과 요구나 피해자의 원상회복 등에 대한 내용이 권고에 반영되지 않아 언론의 평가가 좋지 않았으나 조사 영역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및 법적 제한 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라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비마이너」 기사 인용)



인터넷에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날개를 달자 !!

생명체와 같이 변해가는 정보(웹)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주된 장애인 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표준 및 접근성 진단·컨설팅 전문그룹이며,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컨설팅분야 최초 사회적기업

●●● 웹 표준·웹 접근성 진단컨설팅

웹 접근성 사전진단, 사후검수진단, 감수, 감리자문 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용자성 진단평가로 장애인 당사자 사용편의성 점검



●●● 웹 모니터링 서비스(Web Monitoring Service)

웹 표준화 및 웹 접근성 개선 사업 이후 웹 접근성 품질유지 관리 서비스 제공



●●● 웹 접근성(WA) 인증

웹 접근성 사전진단, 사후검수진단, 감수, 감리자문 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 및 장애인 사용자성 진단 평가 실시



T.(02)2678-0078
E-mail. webwatch@hanmail.net



"장애인권, 이제 실천입니다"

지역별 센터

- 서울 (대표: 이권희) T. 02.2252.90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3동 355-294 4층
- 부산 (대표: 김호상) T. 051.582.7116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235-14 우심빌딩 2층
- 광주 (대표: 김 랑) T. 062.673.0420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1동 1261-2 1층
- 대전 (대표: 안승서) T. 042.286.0036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339-4 동진프라자 332호
- 울산 (대표: 성현정) T. 052.289.125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401-3 신라프라자 105호
- 경기 (대표: 안미선) T. 031.906.30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78-2 남정시티프라자 806호
- 충남 (대표: 박광순) T. 041.579.2752 충남 천안시 두정동 1903 태산빌딩 202호
- 전북 (대표: 김미아) T. 063.229.198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647-1
- 경남 (대표: 문숙현) T. 055.283.131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68-1번지 토월복합상가 3층 303호
- 제주 (대표: 최희순) T. 064.751.8097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1112-22 1층